2021년도 제1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1년 7월 29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지원 위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이 종 렬 금융결제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27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제10호 및 제81조에 의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납입받는 담보증권의 제공비율 인상일정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7월 2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대형 공모주 청약에 따른 은행의 담보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 LCR 고유동성자산 인정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협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 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 통화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당초 일정대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최근 금융경제 상황이 담보비율 한시 인하조치를 실시했던 작년 4월과는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현 시점에서 인하조치 종료 유예가 필요한지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9월말 LCR 규제완화 조치 종료 등으로 은행의 담보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를 LCR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금감원과의 협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담보비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증대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1년이 아닌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100%까지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담보비율을 10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인상 시기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와 담보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RTGS(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검토,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 등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